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26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소방시설공사업법」	6
3. 「자연재해대책법」	12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6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25.
3. 회부연월일 : 2024. 7.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안 제1조)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안 제2조)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자,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제4조)

사업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제 형벌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22.7.13.)하여 경제 형벌 규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선과제를 마련¹⁾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기존 행정제재로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며, ③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하는 것임.

개정안은 이러한 개선의 일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일부 경제 형벌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려는 것으로,

과도한 형벌규정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제재 효과는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에 관한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1) 2022년 8월 1차 과제로 14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3년 3월 2차 과제로 41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같은 해 5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10월 3차과제로 22개 법률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다만, 행정법규 위반에 관한 제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 규율 대상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유형 및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개별 법률별로 검토하겠음.

참고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309)과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22322)가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2. 「소방시설공사업법」: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개정안은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 삭제 및 제40조제1항제14호·제15호).

현행	개정안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제39조(양벌규정) ----- ----- ----- -----제3 7조----- -----

현행	개정안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의3. (생략)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 ----- ----- -----. 제40조(과태료) ① ----- ----- -----. 1. ~ 13의3. (현행과 같음) 14.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 ----- ----- 15.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소방청장,-----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8조

현행	개정안
	및 제39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을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게 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31조제1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40조제1항제14호),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8조제1호),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해당 기관의 사무실에 출입하게 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31조제2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각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8조제2호).

개정안은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위반 사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제1항 (소방시설업 감독) 위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과 같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1조제2항 (업무위탁기관 감독) 위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 차이가 있으며,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 유형의 의무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²⁾

1. 신고의무 위반(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등)
2. 장부(서류)의 작성·비치·보존의무 위반
3. 허가증·등록증·면허증 등의 갱신 또는 반납 불이행
4. 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의무 위반
5. 자료·물건제출, 보고·출석·답변 등의 거부 또는 거짓 이행
6.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7.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8. 공공기관, 그 밖의 특수법인 등의 등기 또는 공공의 불이행, 규정·명령·지시 위반
9. 겸업·겸영 또는 겸직 금지의무 위반
10. 조사·측량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사용의 거부·방해
11.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 외의 요금 수수
12. 그 밖에 경미하거나 수시로 과해지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 또는 명령의 위반

개정안은 ①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809-810면

또한,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법은 소방기술자³⁾에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제27조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36조제7호).

현행법 제36조제7호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소방기술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범죄의 구성요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현행법 제36조제7호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3. 「자연재해대책법」 : 비상대처계획 미수립 또는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개정안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
주체가 이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나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
문교육과정을 위탁받은 자가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및 제79조제1항제5호·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 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 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 영한 자	제7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제79조(과태료) ① ----- -----

현행	개정안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②·③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6.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은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4)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방재교육 및 재해 관련 기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⁵⁾,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구성요건	현행	개정안
제37조제1항 위반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65조 위반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1.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2.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3. 삭제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게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행정제재를 통해 시정이 가능하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 위반행위의 범죄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비상대처계획 미수립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①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 전기설비, 가스공급시설 등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②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및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⁶⁾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리시설 및 그 밖의

한 비상연락체계,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해일 피해 예상지도, 경보체계 및 비상대피계획 및 이재민 수용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⁷⁾

위와 같은 내용은 현재 각 소관 기관 등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및 「위기상황 매뉴얼」이 담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함.

그런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유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⁸⁾에 대해서는

원자력시설

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진파 양상
 4. 해일 피해 예상지도
 5. 경보체계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체계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미작성 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위기상황 매뉴얼」⁹⁾에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뉴얼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대해서는 미작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대처계획 미수립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재해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 및 재해관련 기술인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정 의무교육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재해 관련 인력의 역량 확충 및 전문성 강화라는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것으로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행정제재를 통해 위탁 교육기관의 위반행위를 방지·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법이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관리 및 훈련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¹⁰⁾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문 교육과정 운영 위탁 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과태료 상한을 개정안의 500만원 보다 상향하여 과태료 조항의 의무위반행위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봄.

10)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재 해경감 활동 평가자료 거짓 제출, 우수기업 인증 거짓 표시· 광고 등에 대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

개정안은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및 전문교육과정을 위탁받은 자가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7조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제36조(벌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u>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u>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신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

현행	개정안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u>을 운영한 자</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u>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u> ④ <u>제1항 및 제2항</u>-----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¹¹⁾, 해당 평

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및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¹²⁾,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및 관련 시험의 실시·인증서의 발급을 수행한 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7.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구성요건	현행	개정안
제7조제3항 위반	재해경감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지 않고 거짓으로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하여 거짓 광고한 경우		
제65조 위반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 허위작성 및 미수료자 수료증 발급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벌금 :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개정안은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인증 관련 표시 및 광고를 한 자, ②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를 통해 시정이 가능하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 위반행위의 범죄화를 방지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우수기업이 ①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도 해당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증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인증 관련 표시 및 광고를 하는 등 행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인증 및 지원 취소 처분을 병용함

으로써 합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은 실효적인 입법조치로 생각됨.

다음으로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육성되는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 조건¹³⁾에 해당하므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여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현행법상 전문교육과정의 이수능 기업은 재해를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시험의 응시 요건에 불과하며, 개정안도 부정한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봄.

1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개선사업
시행자의 사업조사 시 토지 출입 방해, 행정청의 처분·명령
위반, 업무 검사 거부·기피·방해·거짓보고에 대한 형벌규정의
형량 조정 및 행정제재 전환

개정안은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조사·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
이를 방해한 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승인 취소, 공사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및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거나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제38조(벌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u>자</u> 3.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신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군수 2. 제1항제2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현행	개정안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법은 ① 사업시행자가 조사나 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동의 또는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¹⁴⁾, ② 사업시행자의 법 위반의 경우 등에는 행정청이 지정 또는 승인 취소,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¹⁵⁾, ③ 행정청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¹⁶⁾, 벌칙 규정을 통하여 위 조항들에 따른 행위를 방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지구의 지정·개선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등과 관련된 조사나 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흙·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흙·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감독 및 사업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개선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선사업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거부·기피하거나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각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구성요건	현행	개정안
제38조제1호	사업시행자의 사업조사시 토지 출입 방해	징역 : 6개월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38조제2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명령 위반		벌금: 1천만원 이하
제38조제3호	검사 거부·기피·방해 또는 거짓보고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조사·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 이를 방해한 자(① 위반) 및 개선사업에 관한 업무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③ 위반)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승인 취소 등의 처분이나 공사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② 위반)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를 통해 시정이 가능하거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 위반행위의 범죄화를 방지하는 한편,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먼저, 토지 등에서의 출입, 개선사업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은 재해 위험 개선사업의 시행 및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절차적 사항으로서 이를 방해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행정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목적이나 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형벌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형태로 제재하는 것이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행정청이 행하는 지정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이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는 과태료로 전환하지 않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부과된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과태료보다 형벌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으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을 배제하고 벌금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의 실효성은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
02)6788-5349